

이주현 노무사 「핵심정리 사회보험법」
제5판 사용자를 위한 정오표 3차 (2020-05-18)

P55 내용수정

*(기존)

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 노⑦	매주 최초 5시간 단축분	육아기근로시간단축개시일을 기준으로 월통상임금에 해당하는금액 × $\frac{\text{단축전소정근로시간} - \text{단축후소정근로시간}}{\text{단축전소정근로시간}}$ (상한액200만원, 하한액50만원)
	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	육아기근로시간단축개시일을 기준으로 월통상임금의 80%에 해당하는금액 × $\frac{\text{단축전소정근로시간} - \text{단축후소정근로시간}}{\text{단축전소정근로시간}}$ (상한액150만원, 하한액50만원)

*(수정)

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 노⑦	매주 최초 5시간 단축분	육아기근로시간단축개시일을 기준으로 월통상임금에 해당하는금액 × $\frac{5}{\text{단축전소정근로시간}}$ (상한액200만원, 하한액50만원)
	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	육아기근로시간단축개시일을 기준으로 월통상임금의 80%에 해당하는금액 × $\frac{\text{단축전소정근로시간} - \text{단축후소정근로시간} - 5}{\text{단축전소정근로시간}}$ (상한액150만원, 하한액50만원)

P244 문제수정

*(기존)

207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급여액의 매주 최초 5시간 단축분을 산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. ()

$$\begin{array}{l} \text{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을 기준으로 산정한} \\ \text{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} \\ \text{(상한액: 200만 원, 하한액: 50만 원)} \end{array} \times \frac{\text{단축 전 소정근로시간} - \text{단축 후 소정근로시간}}{\text{단축 전 소정근로시간}}$$

*(수정)

207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급여액의 매주 최초 5시간 단축분을 산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. ()

$$\begin{array}{l} \text{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을 기준으로 산정한} \\ \text{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} \\ \text{(상한액: 200만 원, 하한액: 50만 원)} \end{array} \times \frac{5}{\text{단축 전 소정근로시간}}$$

P273 47번문제 해설수정

*(기존)

47 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의 매주 최초 5시간 단축분의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다(고보령 §104의2).

육아기근로시간단축개시일을 기준으로
 월통상임금에 해당하는금액 $\times \frac{\text{단축전 소정근로시간} - \text{단축후 소정근로시간}}{\text{단축전 소정근로시간}}$
 (상한액 200만 원, 하한액 50만 원)

따라서, 문제의 경우 다음과 같이 풀 수 있다.

$(200\text{만원}) * ((40-35)/40) = 200\text{만 원} * 5 / 40 = 25\text{만원}$

※ 월통상임금은 220만원이지만 상한액이 200만원이므로, 200만원으로 풀어야 한다.

*(수정)

47 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의 매주 최초 5시간 단축분의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다(고보령 §104의2).

육아기근로시간단축개시일을 기준으로
 월통상임금에 해당하는금액 $\times \frac{5}{\text{단축전 소정근로시간}}$
 (상한액 200만 원, 하한액 50만 원)

따라서, 문제의 경우 다음과 같이 풀 수 있다.

$200\text{만원} * 5 / 40 = 25\text{만원}$

※ 월통상임금은 220만원이지만 상한액이 200만원이므로, 200만원으로 풀어야 한다.